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 | |
|--|--|
| ☐ 재정사업자율평가 전문기관 | ☐ 재정사업심층평가 전문기관 |
| ☐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 | ☐ 타당성 재조사 전문기관 |
| ☐ 기금운용평가단 운영 전문기관 | ☐ 부담금운용평가단 운영 전문기관 |
| ☐ 보조사업평가단 운영 전문기관 | ☐ 복권기금사업평가단 운영 전문기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국가재정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38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해당 업무를 수행할 조직 현황에 관한 서류 2.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3.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평가 또는 컨설팅 등의 실적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